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61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이건태·김성화·김현정

박균택 • 박지혜 • 박희승

서영석 • 위성곤 • 윤종군

이소영 · 정태호 · 추미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제강점을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되는 반헌법적 행위가 벌 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

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고무·선전되지 못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 신설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명하여"를 "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고무·선전되지 못 하도록 하여"로 한다.

제4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일반 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고무·선전되 지 못 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 정의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명칭을 불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자문, 지원, 조력, 감시 등 행위를 수행하는 외부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면 아니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2항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이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 제1조(목적) -----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 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 ----<u>규명하고</u> 친일반민족행 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 위가 찬양·고무·선전되지 못 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 하도록 하여-----적으로 한다. <신 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 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ㆍ 고무 · 선전되지 못 하도록 하 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 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 하는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 관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 략) <신 설>

<u>6</u>. (생 략) <u>제5조</u> ~ <u>제35조</u> (생 략) 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명칭을 불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자문, 지원, 조력, 감시등 행위를 수행하는 외부인)을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예산을지원하면 아니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은 제2항에서 친일반민 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 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 체,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친일반민족행 위진상규명위원회에 심사를 신 청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

- 1. ~ 5. (현행과 같음)
- 6.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 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 ~ 제36조 (현행 제5조부

터 제35조까지와 같음)